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5일, 서미화의원 등 2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1.22.)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1.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을 조사하여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괴롭힘 등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차별행위의 개념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도 일관성이 없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행위 역시 차별행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연광석)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차별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으로,

①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만약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함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②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권리구제 요건인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개념에 같은 법 제3조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 등’을 포함하여 괴롭힘 등의 행위를 당한 장애인 또는 관련자도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도 진정의 대상으로 보아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무상 처리 관행을 반영하여 ‘괴롭힘 등’을 명확하게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조치로 인해 과태료,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바, 국민들에게 개정 내용을 주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집행기관에도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포 후 일정 기간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 따라 ‘괴롭힘 등’이 차별행위가 된 경우, 시행일만으로는 진정 또는 소송 진행 시 어떠한 시점부터 적용될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보이므로, 그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부칙의 시행일을 조정하고, 적용례를 신설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내용을 주지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고, 집행기관에도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하며,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둬(안 부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중 “공포한 날”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여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차별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진정 또는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조(차별 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 (생략) <u><신설></u>	제4조(차별 행위) ①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제3조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신설></u>	제4조(차별 행위) ① (개정안과 같음) 1. ~ 6. (개정안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부칙 <u>제1조(시행일)</u>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u>제2조(차별 행위에 관한 적용례)</u> 제4조 제1항제7호의 개정

		<u>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진정 또는 제기된 소송 부터 적용한다.</u>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제3조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별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또는 제44조에 따라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차별 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제4조(차별 행위) ①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제3조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